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38호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병만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에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기능 추가하고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1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고용·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고용심의회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되, 사용자단체, 노동단체의 간부급 또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등)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실무책임자와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공무원과 시·노사업무 담당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결정으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분과협의회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을 위촉하여 분과협의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⑦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장”으로, “협의회”는 “분과협의회”로 본다.

⑧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협의회”는 “특별위원회”로 본다.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성실히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7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위촉된 협의회 및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 고용정책기본법 -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의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노사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 사무국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지원한도(80백만원)의 20%범위 내에서 최대 13백만원(지방비 매칭시 26백만원)까지 지출 가능함

- 따라서,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됨

4. 작성자 :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신왕식